

국제 사회 내 장애여성의 위치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의 장애여성 권리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부위원장)

I. 들어가며

모든 인권헌장과 법률 속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왜 장애여성은 그 안에 없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법의 특징으로 알고 있었던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법률로 장애여성의 권리는 찾아질 수 있겠는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성차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겠다.

문화적 차별은 우리 나라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차별은 출생시부터 시작한다. 유교적 가부장 제의 영향으로 인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성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성비불균형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단 태어난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 녀차별 사상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적 차별의 원인은 여성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여성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저조하다는 것을 짚어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교육 수준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별 차이의 감소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상급학교 진학률의 경우에 남녀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해 낮아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욱 차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은, 사회적 경제활동 면에서 성별 분리 현상과 차별이 고정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성적 요인이 노동 시장 분절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직, 수평적 성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과 임금 수준이 높은 행정 관리, 전문 기술직에는 제한되어 있으며 학력과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은 남성에 비해 보조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회인식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정치적 차별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아졌다고 하나,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 되어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원인으로 사회적 성별 분업과 자본주의 정치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위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남

성이 정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어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미약하다.

법적 차별을 짚어보면, 현 여성들의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법인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기초를 둔 성차별적 성격의 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법은 가부장제를 유지, 확립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기에 여성은 더욱 부당한 피해를 당해야 했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장애여성들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는 이를 대입시켜볼 수 있으나, 문제는 여성 집단내에서도 장애여성들은 같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장애여성들이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이 속한 사회에서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의 장애여성들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을 위한 회의 중 에 거듭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각국가의 경제력과 사회보장 정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복잡한 양상의 차별과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지역과 성차별적 종교관습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장애 여성이 당하는 인권침해는 더욱 은폐되어 있고 개선하기 어렵다. 이것은 비장애여성에 대한 이미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인권증진 가능성과는 상당히 다르다. *비장애여성 (시각)*

따라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UN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NGO의 의견을 받아서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제안하였다. 오늘의 이 자리는 장애여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된 역사적인 의의를 유지하고, 그 연대의 책임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장애 여성이 주체적으로 마련되었다.

강의안은 경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지만, 강의는 그 요점과 장애여성의 삶과 공감대, 주체성을 강화하는 공유의 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처음 -장애여성 단독조항 설정 주장의 근거1)

1. 각국 장애여성들의 같은 목소리, 우리의 생애사

장애여성은 장애인 인구의 절반임에도 전생애에 걸쳐서 장애남성보다 더 차별받으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남성과는 다른 경험의 영역 속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을 새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크게 일곱 가지 이유가 있다.

1) 김광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의 장애여성단독조항의 쟁점과 내용',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우리는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요구한다"자료집,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장애여성단독조항을 위한 한국장애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회, 2003.3.22. 참조

첫째, 여성은 장애인으로 인식된 때부터 장애인보다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받지 못하고, 이것은 경제활동의 가능성으로부터 배제 당하게 된다. 결국은 노인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되어서도 자기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애여부나 정도와 상관없이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를 강요받거나,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무시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던져진다.

둘째, 모성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다른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모성발현의 과정에 있어서 비장애 여성과는 다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선 임신·출산을 제한당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빼앗겨서도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보장과 직장 내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장애여성의 모성권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장애여성의 여성성이 고려되지 못해왔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장애여성의 성성은 무시되어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무언의 강요를 받은 셈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나라들에게 이것은 더욱 주지되어야 할 사안이다. 2000년 11월 15일

넷째, 장애여성에 대한 가중된 차별적 사회는 장애여성의 비혼이나 이혼의 비율을 높게 한다.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하여서 심각한 장애악화와 빈곤에 처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여성은 소외되어왔다. 장애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일컬어지는 장애인은 남성이었고, 남성이 장애인 모두를 대표해왔다. 장애여성에 관한 정책과 집행은 장애여성 입장에서 소외되어왔으며, 실질적이지 못해왔다.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 평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애여성 당사자들이 국가운영에 한 계층으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장애여성 권리 증진을 촉구하는 국제적 노력들과 그 내용

국제적 규모의 NGO와 국제기구들은 오래 전부터 장애여성들의 생애사를 인식하고, 장애여성들의 인간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제도적 내용들을 제안하여 왔다. 한국의 장애여성 단독조항(15bis)의 내용은 이들 권고문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h200

1) 1980년 UN에서 개최한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²⁾

이 회의에서는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의 상황개선”사항을 설정하고 장애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모든 장애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2000년 12. 17-18쪽.

위해 장애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기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요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UN가맹국에 요청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요약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일반적, 직업적, 보건상의 교육 실시.
- 가족 책임을 진 장애여성이 ~~부모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 노동 혹은 훈련, 일상생활에 실제적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계획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특수한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평등, 개발, 평화를 위한 유엔 여성의 10년 후반부 행동계획의 ~~실시에 있어서~~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에 대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결정.

2)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

이 대회에서도 총372개항의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중 특별관심분야의 한 부분으로 장애여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애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으로 전세계의 장애인 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여성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여전히 제한받고 있어서 “가정과 다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장애여성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하였다.

-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1982년 장애인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 장애여성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직업 및 사회참여, 재활조치, 가사책임 수행을 위한 사회지원체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제공.
- ~~특히 정신지체 장애여성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노력할 것.

3) 1990년 비엔나 세계DPI대회

이 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열었다. 그 결과로 장애여성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20개 항목으로 만들어 각 국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중복-생략)

4)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각국의 200여명의 장애여성들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중에는 빈곤, 교육과 훈련, 건강, 폭력, 경제, 힘(power), 인권, 미디어 등의 부문에 장애여성들 고려할 것을 언급하였다.

3) 앞의 책, 18쪽.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가보고대회, 1995., 67-68쪽.

- 장애여성들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116항) 장애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을 도모하여야 한다.(124항)
- 장애여성들과 같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적절한 법률을 개발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26항)
- 무력분쟁 항에서 장애여성들은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인권침해를 받으므로 무력분쟁이 중단되어야 한다.(131항)
- 다른 취약계층여성들과 함께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장애여성들은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부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225항)

5) 1997년 워싱턴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

북경세계여성대회 후속 조치로 미국의 국제장애인연구소(WID)와 미국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1997년 6월에 워싱턴에서 열렸다. 각국의 600여명의 장애여성들이 참가한 대규모 장애여성들만의 대회였으며, 이 자리에서 세계장애여성들의 비슷한 경험과 정소를 공유한 뜻깊은 포럼이었다. 이 포럼은 전세계 장애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사업, 법, 연구, 기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초적 단계에 있는 장애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직적 리더십, 교육과 개발, 건강, 폭력, 성(sexuality), 고용전략, 의사소통과 기술, 대중매체와 이미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7) 2003- 2012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이 행동계획안에는 우선순위실천 영역으로 장애여성들을 포함시키고,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현안으로써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 고용, 기회의 평등, 자조단체의 지원 등의 구체적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장애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하나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빈곤층이고, 모든 교육, 수입발생, 보건 등의 기회로부터 차단되고 사회활동으로부터 제외되어왔다.
- 신체적 성적 학대의 위험, 모성권의 부정, 결혼과 가정생활 기회의 감소, 농어촌 지역의 장애여성들은 높은 문맹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자존심과 자부심이 결여한 채로 성장하고 여성으로서의 역할 접근을 거부당하고 살아간다.
- 몇몇 국가들에서 장애여성들은 자조단체들 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지도자와 행정가로서 훈련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 비장애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쳐온 주류의 여성운동에서 장애여성들의 문제는 주지되지 못하였고, 기회의 부족으로 장애여성들은 옹호기술이 부족하게 되었다.
- 정부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류의 발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3. 장애여성 조항의 주요 내용과 제안 과정

1) 한국추진연대의 초안 작성의 과정 및 내용

UN 3차 특별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본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게 된 취지는, 2차 특별 위원회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UN 특별위원회 워킹그룹회의에서 작성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에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⁵⁾ 한국추진연대의 장애여성 조항 안(案)은 두 명의 장애여성 초안위원이 기 초안을 작성하고 한국추진연대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한국추진연대의 장애를 가진 여성(안)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2월에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아태지역회의 등의 국제회의 참가 보고대회에서 한국초안을 위한 공개토론에 제안됨으로써 가능하였다.

한국추진연대의 “장애를 가진 여성(안)”은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회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분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3개의 항목에 9개의 세부항으로 작성하였다.

2) 초안의 골자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회의 장애를 가진 여성(안)은 각 국제조약의 형식과 내용, 위에서 기술한 국제기구와 NGO's의 권고 내용, 국내 여성관련법 등을 참고로 작성되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의 성 차별 없는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 여성 평등권의 일반적 원칙을 담았다. 둘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한 법 제정과 정책마련의 근거가 되는 조사사업에서 장애여성 항목을 삽입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사항에 있어 가장 핵심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도 입법조치와 제제를 담고 있다. 셋째, 접근권에서의 성별적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담았다. 장애인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들 나라들에서 장애인에 관한 설비는 비용과 편의주의에 의해 물성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장애여성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모성권 및 노동권의 보장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여러 권고와 실천 강령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조치가 없다면 장애여성들은 다양한 불이익을 겪으며 살면서 가장 대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여섯째, 장애여성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조그룹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자에 대한 장애여성에 관한 인식교육을 담았다.

5) '(5) 장애를 가진 여성',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유엔 특별위원회 워킹그룹 참가보고 및 초안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67쪽. 2003. 12. 19.

6) '(6) 장애여성', "2003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회의 보고대회 및 한국초안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58쪽. 2004. 5.

III. 두울- 법률적, 정책적 실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단독 조항의 필요성

1. 메인 스트리밍에 대한 반론(상황적 필요성)

- 1) 장애여성은 장애인의 절반이다.
- 2)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은 형태는 같아도, 강도가 다르다.
- 3) 장애여성을 차별경험을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 4) 메인 스트리밍은 장애여성을 일반원칙들에만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법적 필요성

- 1) 각 조항 내에서는 실효적인 조망을 받기 어렵다.
- 2)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분명하게 적시되기 위해서는 단독 조항이 되어야 한다.
- 3) 실질적 평등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여성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1) 제2조 일반원칙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과 남성의 평등 조항이 추가 신설 제안
- 2) 제4조 국가의 의무 조항에서의 새로운 항 신설 제안
- 3) 단독 조항으로서 장애여성(15bis) 수정 제안

V.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속의 최종 장애여성 권리 언급한 내용

전문

d)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 반대 협약, 아동 권리 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상기하며,

n) 인종, 피부색, 성별(sex),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및 기타 견해, 국적, 민족(ethnic), 태생적 출신 및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연령 및 기타 위상 등을 이유로, 다중적 차별 혹은 가중된 형태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조건에 대해 우려하며,

o)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들이 보다 심각한 위협에 자주 직면하며, 가정 안팎의 폭력에 시달리고 상해를 입거나 혹은 학대를 당하고, 방치되거나 혹은 소홀히 대우 받고, 학사 당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며,

3조 일반원칙 (g) 남녀 평등

6조 장애 여성

1. 당사국 정부는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다중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며, 이런 맥락에서,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 여성이 본 조약에서 명시하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행사,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온전한 발전, 능력 향상(advancement) 및 역량 강화(empowerment)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조 인식 개선

1. 당사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b) 성별, 연령 및 기타 삶의 모든 측면을 비롯해 장애인과 관련된 고정 관념, 편견 및 해악적인 관행에 맞서 싸울 것.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 정부는 성별 기반 측면을 비롯한 가정 안팎의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착취, 폭력 및 학대를 피하고, 이를 인지하며 사례를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적절한 형태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caregiver)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연령, 성별 및 장애 유형별 보호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모든 시설(facility) 및 프로그램을 독립 기관이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 정부는 착취, 폭력 혹은 학대의 어떤 형태에서든, 그 피해자가 된 장애인에게, 보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 및 재통합 서비스는, 해당인의 건강, 복지, 자존 및 존엄성을 증진하고, 성별 및 연령별 특정 요구를 고려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5. 당사국 정부는 여성과 아동에 주안점을 둔 법률 및 정책을 비롯한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파악하고 조사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하는 것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25조 건강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최상으로 달성가능한 건강 기준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당사국 정부는 건강 관련 재원을 비롯해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gender-sensitive)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 정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타인(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주이며, 양질의, 무상 혹은 저렴한 보건 의료 기준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며, 이 기준 및 프로그램에는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과 인구 비례 공공 보건 프로그램(population-based public health programs)이 포함된다

28조 적절한 생활 수준 및 사회 보호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이러한 권리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 및 장애 노인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 및 빈곤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보장

34조 장애인 권리 위원회

4. 위원회 위원은 적절한 지역 안배, 다양한 문명 및 주요한 법 제도, 성별 균형과 장애 전문가 참여 부분을 고려해 당사국 정부가 선출해야 한다.

Ⅶ. 나오며- 의의 및 향후 과제

본 조약내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명을 만들어내고, 각 조항 및 모티터링과 위원회에 장애여성에 대해 언급된 것은 규범력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여성과 관련된 각종의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건에서 장애여성은 없었으며,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도 국제문건은 실효적이지 못했다. 각 국가내의 장애인 관련법에서도 장애여성을 동등

하게 대우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힘들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성사시키면서 장애여성 당사자들의 운동을 통하여 거둔 이러한 성과에는 한국의 장애여성들과 지원활동가, IDC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 장애여성들의 동반자적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장애여성 또한 “우리가 있기에 우리에게 관한 것을 이루었다.”

앞으로 본 조약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각 국가 내에서 장애여성관점을 주류화 시키도록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단지 장애여성을 언급한 조항의 이행 뿐만 아니라, 전문이나 일반원칙상의 남녀평등규정, 제6조 “장애여성”을 모든 조항의 우산 역할이 되도록 해석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본 조약 체결안은 장애여성들이 주장하는 권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교육권,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 등 삶의 중요한 지표들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현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요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는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

장애여성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법으로서 각 국가의 장애인 및 여성과 관련되어 정책기구와 예산, 통계구축을 확보하여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장애여성 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장애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분석을 통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여성 과 남성에게, 장애여성 과 비장애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끈질긴 활동을 해나가야만 장애여성에 관한 사회적 태도들이 올바르게 수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국내에서 일부 지식인인 장애여성들만에 의하지 않고 장애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함께 하였으면 한다. 속도가 느려도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마인드의 실천으로서 제3세계 국가들의 장애여성 인권침해 상황도 연대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사회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